

증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2003. 12. 15]

규칙 제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 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 의결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시 험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 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

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중(2점)·하(1점)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기능직 기능9급이하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4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⑧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

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무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9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3장 임 용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항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횡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군의 경우는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28조(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에 근무하는 8급공무

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군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9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8. 30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 험	승진 시험	비 고
1	재직증명서 1부		○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함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	○		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시·군, 읍·면·동장 발행
4	복무확인서	○		현역군인에 한함
5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6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 조에 규정된 취업보호 대 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함
8	시험요구서 1부		○	

[별표 2]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8조 관련)

계 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 · 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6급 · 7급 · 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7급 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8급 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 비고 : 1. 5급이상 공무원 · 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 ·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기능직공무원중 농림 · 위생 · 조무 · 방호직렬의 10급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별표 3]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9조 및 제16조제4항 관련)

직렬	직급 직류	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	전 직 류	국문학, 고고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미술학(회화, 조소, 공예에 한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또는 음악(국악·기악, 성악 및 작곡을 말한다)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정미기계공학, 기계공학·기계설계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물리학 또는 전자계산기공학을 전공한 자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또는 공업경영학을 전공한 자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또는식물학을 전공한 자
	식물환경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또는 축산경영학을 전공한 자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또는 식물학을 전공한 자
	유전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	직급 직류	연 구 관 · 연 구 사
농업연구	농촌생활	가정관리학, 의류학, 아동학, 식품영양학, 주생활학, 농가정학 또는 소비자학을 전공한 자
임업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또는 경제학을 전공한 자
잠업연구	잠 업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한 자
축산연구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공연구	농 공	농업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연구	전 직 류	수산학, 해양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	의 학	의학, 한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한 자
	약 학	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의학, 치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보건학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토목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축연구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한 자

비고 : 윗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9조 관련)

직렬	직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생활지도	생 활	식품가공학, 농가정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아동학, 가정교육학, 가정복지학 또는 주생활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고 : 윗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5]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7조 관련)

직렬\직급	직급	5급이상	6급·7급	8급·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약 제	약사, 한의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직렬 \ 직급	직류	5급이상	6급 · 7급	8급 · 9급
지 적	지 적	기술사(지적, 측지)	기사(지적, 측지)	산업기사(지적, 측지) 기능사(지적, 측지)
측 지	측 지	기술사(측지, 지적)	기사(측지, 지적)	산업기사(측지, 지적) 기능사(측지, 지적)

비고 : 직렬별로 상위계급의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시험응시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6]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제16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등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

임용 예정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 의등급 및 소요 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8년)	기사(3년) 산업기사(5년)	기사 산업기사(2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 예정 계급	6급	7급	8급	9·10급
자격증 의등급 및 소요 경력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1급 산업기사(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기능사

나. 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기능분야를 비교하여 상호간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 (2) 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 기타요건

-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 (2) 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5년이상
 - 3급 : 12년이상
 - 4급 : 7년이상
- (3) 상위직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2.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 경력구분표

직 렬	직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법무행정	변리사(4)	변리사				
	재 정	변호사,					
	국제교류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 정	변호사, 공인노무사(7)	공인노무사(3)	공인노무사(3)			
	문화공보	변호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3)			

직 렬	직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기업 행정	기업 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사회 복지	사 회 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기업 행정	기업 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 서	사 서	1급정사서(5)	1급정사서 2급정사서(6)	2급정사서 (3)	2급 정사서	준사서	
축 산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		
수 의	수 의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 의사(2) 수의사(7) 약사(7)	수의사(3) 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증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직 렬	직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류						
보 건	보 건		조산사(12) 간호사(12)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급(8) 위생시험사 1급(8) 영양사(12)	위생사1급(3) 위생시험사 1급(3) 영양사(8)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5)	위생사2급(2) 위생시험사 2급(2) 영양사(2)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 2급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 (12) 치과기공사 (12) 치과위생사 (12) 작업치료사 (12)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 (8) 치과기공사 (8) 치과위생사 (8) 작업치료사 (8)	임상병리사 (5) 의무기록사 (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 (5) 치과기공사 (5) 치과위생사 (5) 작업치료사 (5)	임상병리사 (2) 의무기록사 (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 (2) 치과기공사 (2) 치과위생사 (2) 작업치료사 (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직 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직급	직급	직급	직급	직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선취급 감독자(5)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과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약사(3)	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사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수 질	수의사(7)	약사(3)	약사		
	대 기	약사(7)	위생사1급 (3)	위생사1급	위생사2급 (2)	위생사2급
	폐 기 물	위생사1급 (8) 위생시험사 1급(8)	위생시험사 1급(3)	위생시험사 1급(3)	위생시험사 2급(2)	위생시험사 2급
건축	건축	건축사(5)	건축사			

비고 : 제1호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 렬	직급 직류	6급	7급	8급	9·10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 (보통) 제2종운전면허 (보통)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조산사(5) 간호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조산사(2) 간호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조산사 간호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1급(3) 위생시험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2)	위생사2급(2) 위생시험사 2급(3) 영양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조리사1급 조리사2급(2년)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1급(3) 오물처리사 1급(3)	조리사1급 조리사2급(2) 오물처리사1급 오물처리사2급(2)

직 렬	직급 직류	6급	7급	8급	9·10급
	직류				
사무보조	위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 력2급이상 한글타자1급 영문타자 1급	워드프로세서2급 워드프로세서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이상 한글타자2급 한글타자3급 영문타자2급 영문타자3급비서 2급
	필 기			한글속기1급 영문속기1급 워드프로세서 1급 한글타자1급 영문타자1급	한글속기2급 한글속기3급영문속기2급 영문속기3급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타자2급 한글타자3급영문타자2급 영문타자3급2급
	계 리			주산1급이상 부기1급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사 서	2급정사서 (3)	2급정사서	준사서	

비고 : 제1호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승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방사, 방직, 제도, 염색가공, 생사, 의류)	기사(의류, 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화 학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 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식물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유전공학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위생사 1급(8), 위생시험사 1급(8)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5), 위생사 2급(5), 위생시험사 2급(5)
임업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업연구	잠 업	기술사(생사)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축산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수의사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공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지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약사, 한의사
	공중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보건연구	공중보건	식품)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수의사(7), 위생사 1급(8), 위생시험사 1급(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 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위생사 2급(5), 위생시험사 2급(5), 영양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사(2), 약사(7), 수의사(7), 위생사1급(8), 위생시험사 1급(8)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위생사 2급(5), 위생시험사 2급(5)
토목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축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비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지도직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화학)
	임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생산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청소년지도사(5)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생활지도	생 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1급(8), 위생시험사1급(8)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위생사2급(5), 영양사(5)

- 비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기사 1급 자격증소지자는 해당자격증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소지자는 해당자격증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3급 정사서
기 계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술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품질관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품질관리, 영사)
	농업기계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관금제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설계, 산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전기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기기, 전기공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기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기사(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금 속	금 속 야 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섬 유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섬유기계, 염색)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편물, 산업안전, 품질관리)
화 공	일반화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품질관리, 식품)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화 공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자 원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 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잠 업	기술사(생사)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품검업	기술사(농화학)	기사(농화학)	
	농 화 학			
임 업	일반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농화학)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가공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축 산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 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지구물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산업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환경	폐기물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기사(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공업화학,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교통	교통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토 목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건 축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측 지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통 신 사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통신기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기사(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송기술	기술사(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통신 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 비 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정, 지적)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교환	교환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계	기계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기계	기계	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	수립,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난방	난방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도, 위험물관리)
선박	선박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원예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머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위생	위생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사무 보조	워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직렬\계급 직류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사무 보조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계리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준사서
전산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 비 고 :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9]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5조제1항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처리 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 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 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 업기사			2%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 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 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 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 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 용능력 2 급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 용능력 3 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

[별표 10]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5조관련)

1. 행정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 5%

직 렬	직 류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	감 사	변 호 사 공 인 회 계 사 감 정 평 가 사 세 무 사	5%
	세 무	변 호 사 공 인 회 계 사 세 무 사	

2.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11]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5조제2항 관련)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법무행정		변 리 사
	재 정	—	변 호 사
	국제교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노 정	—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공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기업행정	기업행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 계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	
	농업기계		
	공업연구 기 계		
농촌지도	농업기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촌지도	농업기계	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영사	
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 계	기계운전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정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클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운전	
전 기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공업연구	전 기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기사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전 자	기술사 :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공업연구	전 자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연구	전 자	산업기사 :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사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금 속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공업연구	야 금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움,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섬 유	기술사 :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섬유기계, 염색 기사 :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 산업기사 : 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편물, 산업안전, 품질관리	
공업연구	섬 유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연구	섬 유 기능사 : 방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 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화 공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 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공업연구	화 공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자 원	자 원 기술사 :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기사 :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 :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농업연구	작 물 원 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농 업	잠 업	기술사 : 생사	
잠업연구	잠 업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 업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농업연구	식물환경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농 업	농 화 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시설원예, 버섯종균, 식물보호, 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농업연구	유전공학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자격증
생활지도	생활		가산비율적용
농업연구	농업경영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농촌지도	농업경영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양사,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농촌사회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농공연구	농 공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고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공연구	농 공	산업기사 : 생산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임업 농업연구	일반임업 임업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촌지도	임업		
임업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농화학 산업기사 :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기능사 : 산림, 식물보호	
	가공이용	기술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축 산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축산연구	축 산		
농촌지도	축 산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기술사 : 축산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능사 : 축산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공업연구	물 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 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영양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1급, 위생 시험사 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영양사, 위생 사 2급, 위생시험사 2 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 과 의사, 약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 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의무기 록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연구	의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약사, 한의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환경연구	환경		
환경	수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능장 : 산림 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환경	대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구물리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환경 폐기물	기술사 : 공업화학,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공업화학,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교통 교통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토 목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토 목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건축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측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통신사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통신기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전자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증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전자통신 기 술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 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 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2]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6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4급 · 지도관	5급 · 지도관	6급 · 기능직6급 이상 · 지도사	7급 · 기능직7급 이상 · 지도사	8급 · 기능직8급	9급 · 기능직9급 이하
직무분야							
경 찰 공 무 원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 · 전문대학포함)교원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상	

증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4급 · 지도관	5급 · 지도관	6급 · 기능직6급 이상 · 지도사	7급 · 기능직7급 이상 · 지도사	8급 · 기능직8급	9급 · 기능직9급 이하
관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박사학위 소지 후 5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 비 고 : 1. 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 경력 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별표 1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6조제4항 관련)

1. 연구직 및 지도직외의 기술직공무원

직 군	직 렬	관 련 학 과
광 공 업	기 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전 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화 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립수산	농 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임 업	임업
	축 산	축산
	수 산	수산, 해양
시 설	토 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축 지	토목(토목건설)
통 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 신 기 술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보건 의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2. 지도직공무원

직 군	직 렬	관 련 학 과
농 립수산	농 촌 지 도	농업계통(수의학포함)
	생 활 지 도	식품가공, 농가정,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주생활

[별표 14]

특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5항 관련)

계 급	2 급	3 급	4 급
연 구 경 력	13년	10년	5년

비 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후 연구경력임

[별표 15]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연구직·지도직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0조제3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기 계	전 직 류
	전 기	전 기	전 기
	전 자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금 속
			야 금
	섬 유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물 리	물 리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농촌지도	일반농업
			농 화 학
	식물환경	농 업 농촌지도	농 업
			식물방역
	농업경영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농업경영
	원 예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유전공학	농 업	농 화 학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촌사회
		생활지도	생 활
임업연구	임 업	임 업	전 직 류
		농촌지도	임 업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잠업연구	잠 업	농 업	잠 업
		농촌지도	잠 업
축산연구	축 산	축 산	축 산
		농촌지도	축 산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농촌지도	가축위생
농공연구	농 공	기 계	농업기계
		토 목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수산연구	해양환경	환 경	수 질
		수 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자원	수 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양식	수 산	수산중식
		어촌지도	어 촌
	수산공학	수 산	어 로
		어촌지도	어 촌
	수산가공	수 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어촌지도	어 촌
수산경제	수 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기상연구	기 상	기 상	기 상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약 제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보 건
			일반환경
			수 질
			대 기
토목연구	토 목	토 목	폐 기 물
			일반토목
건축연구	건 축	건 축	농업토목
			건 축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 업	일반기계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 업	임 업	전 직 류
		임업연구	임 업
	잠 업	농 업	잠 업
		잠업연구	잠 업
	원 예	농업연구	원 예
	축 산	축 산	축 산
		축산연구	축 산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기 계	농업기계
	농업토목	토 목	농업토목
생활지도	생 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별표 1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제26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8 급		지도사로 재직한 기간
9 급		

비 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7]

특정직·별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26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 기능6급 이상	7급 · 기능7급	8급 · 기능8급	9급 · 기능9급 이하
경찰공무원	경 정	경감 · 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정 소 방 령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소령 · 대위	중 위	소위 · 준위	일등상사 · 이등상사 · 중 사	하 사
국가정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별표 18]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8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4 급 · 연구관· 지 도 관	5 급 · 연구관· 지 도 관	6 급 · 연구사· 지 도 사	7 급 · 연구사· 지 도 사	8 급	9 급
교육 공 무 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 학교 및 동부 설연구소의 교 원 포함)	부 교 수 조 교 수	조 교 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6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2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1 호 봉 이 하 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 단체		부 장	과 장 (차 장)	계 장 (대리)	평 사 원 (3년이상)	평 사 원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하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시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②주 소		(통 반)									
③최종출신학교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졸업예정·수료·재학									
		※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									
④경 력		년 월 일부터 종사									
⑤선 과 택 목	1	2	3	⑥가 산 기표란	기능	주 급	타 급	⑦취업보호 대상자()	⑨비 고		
					시행 기관			⑧제대(현역) 군인복무기간			
⑩응 계 시 급	급			⑫	(한글)			⑮성	남	⑯사 진 반명함판 (3.5cm× 4.5cm)	
⑪응 직 시 렬	(직)				(한자)			별	여		
※응시 번호	부호				⑬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⑭주민등록번호						
계 인											
⑰응 계 시 급	급			응시원서(부분) 시험					⑲사 진 반명함 판	※ ⑳우무인 출원시에 는 찌지 말것 (3.5cm×4.5cm)	
⑱응 직 시 렬	(직)			⑲성 명	(한글)	⑳성 별	남	여			
※응시 번호	부호				㉑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㉒주민등록번호						
계 인											
㉔응시 계급	급			응시원서(부분) 시험					㉓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㉕응시 직렬	(직)			㉕성명							
※응시 번호	부호				㉖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1203-1-1A
1978. 10. 13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120g/m²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⑱㉓…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⑫㉒㉔… 정자로 기재하되 ⑫㉒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최종출신학교 ③… 학교명, 학과 및 학년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수학구분 중 해당하는 것에 ○표할 것. 다만,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재학 또는 졸업(수료)인 경우에는 그 출신대학을 ※란에 기재할 것.
5. 경력 ④…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6. 선택과목 ⑤…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수입증지 첨부란

7. 가산기표란 ⑥⑦⑧…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 또는 ○표)를 할 것

※ ●표의 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표의 대상자

- (1) 군인사법 제7조 또는 병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병인 경우 육군과 해병대는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 군인(전투경찰 제대자 포함)
- (2) 군에 복무중인 자로서 최종시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예정인 자

8. 응시계급 ⑩⑰㉖…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⑪⑱㉓…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안에는 당해 직렬 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생년월일 ⑬㉑㉓…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연령을 기재할 것.
12. 주민등록번호 ⑭㉒…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13. 성별 ⑮㉒… 해당하는 성별에 ○표 할 것.
14. 사진란 ⑯㉒㉓…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폴로 첨부할 것.
15. 우무인 …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 번호		제 회 번		⑥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한문)	② 생 년 월 일 .(.)(세)		④ 성 별 남 ☐ 여 ☐	⑤ 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 시 제1지역 군		※ 등록심사	
	③ 주민등록번호					사진대조	서류심사
⑦ 현 주 소						⑨인	⑨인
⑧ 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사진부착)	
	미필사유						
⑨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⑩ 자 격 면 허				⑪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⑫ 특 기		⑬ 취 미		⑭ 운 동		⑮ 종 교	
⑯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호적초본(반드시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가 기재된 호적초본) 2통
-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인 된 것) 1통
- (5)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6) 면허증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7)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8)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9)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
- (10)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직근무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타자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고유명사 기타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명기한다.
- ② 생 년 월 일 …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④ 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 ⑤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⑥ 시험합격구분 … (예) 2003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통, 반까지 기재한다.
-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 ⑨ 학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 ⑩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⑪ 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⑫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⑬ 재산상황…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⑪ 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⑫ 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본적을 전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나. 본적은 호적과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

다. 가족사항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라.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을 기재

마. 8·15이후 거주지 기재에는 기간(년월일), 거주지(번지 및 통·반까지), 당시 호주 및 전거사유를 기재하고,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전거사실이 없을 경우 현재 본적·주소를 기재한다.

바. 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단

[illegible]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
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 첨 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발 신 기 관 명)

직 인

0202-1-9A

190mm×268mm

1969. 12. 3 승인

(신문용지 50g/m²)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0202-1-10A190mm×268mm

1969. 12. 3 승인(신문용지 50g/m²)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0202-1-11A190mm×268mm

1969. 12. 3 승인(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5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요구				직류		
					계급	급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명	
	한자					직류	
					계급	급	
⑦ 선 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 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 시행 제 회 1 차 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격·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같이 요구함.					계 인	(사진)	
년 월 일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인)	(3.5cm×4.5cm)	
※ 시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 . .	. . .	. . .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사진)	
년 시행		제 회	시험	인			
임용예정직명 :		(급 류)					
성 명 :							
시험요구기관명 :		년 월 일			위 요구서에 첨부 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인)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특별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의한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3. 시험 당일은 매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 무 수 습 계 획 서

성 명		성 별	남·여	생 월 일	년 월 일	주소			
시험구분	()직 제 회 급 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학 력					경 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기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직부여
	연 월 일			년 월 일 월 간 년 월 일		월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치부서								
	수습 계획 기간								
	실지 수습 기간								